

충청북도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5년 11월 11일(이대원의원외 7명)

나. 회부일자 : 2005년 11월 14일

다. 상정일자 : 2005년 11월 22일(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이대원 의원)

가. 제안이유

- 남녀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 등에서 명시한 여성정책의 세부집행기준을 마련하고 개별규정으로 명시된 여성관련 규정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본문 4장 40조, 부칙 3조로 규정되어 있음
- 제1장은 총칙으로 동 조례안의 목적, 용어의 정의, 도 및 도민의 책무 적극적인 조치 등을 규정하였음

- 제2장은 여성정책으로 여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여성관련 문제의 조사, 여성주간행사와 정책결정과정 도정참여 확대, 성폭력 및 가정폭력예방, 성차별 개선, 여성단체지원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음
- 제3장은 여성정책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임기,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제4장은 여성발전기금으로 기금의 설치, 조성, 용도 및 기금운용심의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 부칙으로 시행일 및 『충청북도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폐지와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재준)

-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을 위한 기본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 등에서 위임된 여성정책의 세부집행기준을 마련하고 개별규정으로 있는 여성관련 규정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북도가 추진해야 할 여성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첨부서류

○ 충청북도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기타 여성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법령”이라 함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여성단체”라 함은 법 제3조제2호에 규정된 단체를 말한다.
3. “여성관련시설”이라 함은 법 제3조제3호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4. “소속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도 소속 행정기관과 동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의회사무처를 말한다.
5. “투자기관”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제3조(도의 책무)도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기타 여성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모든 도민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성관련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극적 조치)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장 여성정책

제6조(여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①도지사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2. 여성정책의 추진목표
 - 가. 양성평등의 촉진
 - 나.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 다. 여성의 복지 및 권익증진
3.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시책
 -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지원
 - 나.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지원
 - 다.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라. 요보호여성의 발생예방과 지원
 - 마. 한 부모가정 등에 대한 지원
 - 바. 기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극적 조치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여성정책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②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군, 공공기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①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주요 여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부서 및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 및 도가 출연한 출연기관 및 민간연구기관에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지원 및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여성관련문제의 조사 등)①도지사는 효율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초 조사 및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도와 소속기관에서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9조(여성주간행사) 도지사는 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주간(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를 말한다)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하거나 행사 주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정책결정과정 도정참여 확대) 도지사와 소속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자문의결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거나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공직참여 촉진 등) ①도지사는 양성의 공직참여 기회를 균등히 하기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도지사와 소속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퇴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가정과 학교, 사회교육 등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모성보호의 강화) ①도지사와 소속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여성이 특별히 보호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이유로 하여 여성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및 고용촉진) ①도지사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여성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경제활동의 지원) ①도지사는 여성의 취업·창업·기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15조(여성의 복지증진) ①도지사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저소득 모자가정·미혼모·가출여성 및 요보호 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선도·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여성노인 및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여성장애인의 재활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아동보육 등) ①도지사는 보육의 질적 수준향상, 보육시설의 확충 등 아동보육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기타 아동보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도지사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제18조(여성의 국제협력) 도지사는 국제기구와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국제적 평화증진운동과 국제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성차별의 개선 등) ①도지사와 소속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문서·회의·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와 소속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도지사는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여성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법 제3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충청북도 여성발전기금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①도지사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3장 여성정책위원회

제23조(설치)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여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한다.

1.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4. 여성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충청북도 여성발전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6. 기타 여성정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5조(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위촉한다. 다만, 기획관리실장 및 여성정책관과 충청북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 2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여성정책담당사무관이 된다.

제2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3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운영세칙) 이 조례가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32조(기금의 설치 등) ①도지사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북도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3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여성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
3. 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한 사업
4.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사업

5.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사업
6. 여성의 사회교육 및 국제교류사업
7. 요보호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8. 기타 여성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5조(기금운용계획 및 관리) ①도지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기금은 도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운용기금과 적립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하여야 한다.

제36조(기금운용심의)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조성 및 기본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에 따른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제37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여성정책관으로, 기금출납원은 여성정책담당사무관

으로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 년도의 기금운용 상황과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이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충청북도 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충청북도 여성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발췌서

□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정책"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2. "여성단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여성관련시설"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2조(여성정책의 범위등) ①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정책을 말한다. <개정 2003.3.12>

1. 교육에서의 남녀평등에 관한 정책
2.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확대에 관한 정책
3. 고용상의 남녀차별해소에 관한 정책
4. 여성고용촉진 및 안정에 관한 정책
5. 여성보건 및 모성보호에 관한 정책
- 5의2. 여성인적자원의 개발에 관한 정책
6. 보육시설에 관한 정책
7. 저소득 모자가정의 여성, 미혼모, 가출여성, 장애여성 등 보호를 요하는 여성 및 노인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8. 농어촌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8의2. 평등한 가족관계의 확립에 관한 정책

9.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의 방지에 관한 정책

10. 가사노동가치의 평가 등에 관한 정책

11. 여성의 국제적 평화증진운동 및 국제협력강화에 관한 정책

11의2.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책

12. 기타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정책

②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8.2.28, 2001.1.29, 2005.6.23>

1.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2. 기타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③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2.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제7조(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5.3.24>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2. 여성정책의 추진목표

가. 남녀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다. 여성의 복지증진

라. 기타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시책

3.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5.3.24>

제14조(여성주간)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년을 여성주간으로 한다.

제26조 (여성주간 행사)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를 여성주간으로 한다.

②제1항의 여성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에서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기타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 지방자치법

제82조(사무처의 설치) ①시·도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제104조(직속기관)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소방기관·교육훈련기관·보건진료기관·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05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의 정원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6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7조(합의제 행정기관)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삭제 <2005.7.13>

②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각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2(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개정 2002.12.31>)

-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이상일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개정 2002.12.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경우에 그 실시대상시험의 종류, 채용목표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2.12.31> [본조신설 1996.3.23]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위탁계약 및 보육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계획을 협의함에 있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증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자금지원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예탁의무)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